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음. 이에 국민의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절차적 방어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 2. 28. 시행)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제5호의2)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들의 현행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제18호의2, 제18호의3, 제1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의2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7. (생략) ② · ③ (생략)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u>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 ----- ----- ----- -----.

1. · 2. (생 략)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 ⑧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제18호의2, 제18호의3, 제1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의2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	
연 락 처	(02) 2110 - 3504